

2026년도 평창군의회 연구단체(자치법규 정비) 정책개발 연구보고서

2026. 6



평창군의회

[책임연구자]

남상기 (주)정책기획연구소 실장

[참여연구진]

최진우 (주)정책기획연구소 부장

우지혜 (주)정책기획연구소 과장

김찬욱 (주)정책기획연구소 주임

2026년도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자치법규 정비) 정책개발연구 용역

발 행 일 : 2026년 6월

발 행 인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발 행 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TEL 033) 330 - 2191

연구기관 : (주)정책기획연구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2 리젠트프라자 302호

TEL 070) 4070 - 4002

제 출 문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귀중

본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2026년도 평창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자치법규 정비) 정책개발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 6

주식회사 정책기획연구소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13
2. 자치법규 현황	16
3.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범위	21
2. 연구의 내용	21
제2장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25
제1절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및 분석틀	27
1.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27
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분석틀	30
제2절 자치법규 입안 기준	31
제3장 분석결과	49
제1절 용어의 정비	51
1.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51
2.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54
3. 전문용어	55
4. 차별적 표현	57
제2절 입법체계 정비	63
1. 법제 형식	63
2. 총칙 규정	65

3. 본칙 규정	77
제3절 필수조례 정비	84
1. 미마련조례 현황	84
2. 미마련조례 정비(안)	86
제4절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91
제5절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93
1.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93
2. 재단 폐지	94
3. 지원 사업의 변경	95

제4장 입법 제안 99

제1절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99
1. 일괄개정에 의한 조례	101
2. 일괄개정조례안 예시	102
제2절 신규 조례 제안	107
1. 신규 조례안 개요	107
2. 제안 조례안 예시	107

부 록 127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용어	129
#2.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130

Contents

표·그림 목차

<표 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14
<표 1-2>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5
<표 1-3>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5
<표 1-4>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2025년 자치법규 운영현황	16
<표 1-5>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2025년 평균 자치법규 수	16
<표 1-6>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현황(단위 : 건)	17
<표 1-7>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인구 규모 유사 지역 조례 현황(단위 : 건)	17
<표 1-8>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소관부서별 조례 현황	18
<표 1-9>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평창군의 특별회계	18
<표 1-10>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평창군의 기금 설치 현황 및 설치 근거	19
<표 1-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법제처 발간 자료	23
<표 2-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29
<표 2-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 지원 발간 자료	30
<표 2-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32
<표 2-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헌법 제37조	34
<표 2-5>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헌법 제11조	35
<표 2-6>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36
<표 2-7>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예시	38
<표 2-8>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입법례	39
<표 2-9>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특정 조항 한정 광업법 입법례	41
<표 2-10>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재정법	42
<표 2-1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3
<표 2-1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공유재산의 종류	43
<표 2-1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위원회 입법례(국가인권위원회법)	44
<표 2-1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법	45
<표 2-15>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요 연혁	46
<표 3-1> 용어의 정비 -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	51
<표 3-2> 용어의 정비 -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54
<표 3-3> 용어의 정비 - 전문용어	55
<표 3-4>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57
<표 3-5> 용어의 정비 -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7

<표 3-6>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8
<표 3-7>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8
<표 3-8> 용어의 정비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58
<표 3-9>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59
<표 3-10>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59
<표 3-11> 용어의 정비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59
<표 3-12> 용어의 정비 -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60
<표 3-13> 용어의 정비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61
<표 3-14> 입법체계 정비 - 법제 띄어쓰기 정비	63
<표 3-1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4
<표 3-1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65
<표 3-1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65
<표 3-1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66
<표 3-1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66
<표 3-20> 입법체계 정비 -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66
<표 3-2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66
<표 3-22> 입법체계 정비 -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67
<표 3-2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67
<표 3-2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67
<표 3-2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67
<표 3-2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68
<표 3-2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68
<표 3-2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69
<표 3-2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69
<표 3-3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69
<표 3-3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9
<표 3-32> 입법체계 정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70
<표 3-3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70
<표 3-3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70
<표 3-35> 입법체계 정비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71
<표 3-3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72
<표 3-3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72
<표 3-3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73
<표 3-3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73
<표 3-4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73
<표 3-4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74

<표 3-42>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74
<표 3-4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74
<표 3-4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75
<표 3-4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75
<표 3-4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76
<표 3-4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6
<표 3-4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	77
<표 3-4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78
<표 3-5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8
<표 3-5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78
<표 3-52>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79
<표 3-5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79
<표 3-5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0
<표 3-5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81
<표 3-5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81
<표 3-5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82
<표 3-5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3
<표 3-59> 필수조례 정비 - 마련되지 않은 자치법규 목록	83
<표 3-60>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표 3-61>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87
<표 3-62> 필수조례 정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87
<표 3-63>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88
<표 3-64>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88
<표 3-65>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9
<표 3-66>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91
<표 3-67>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92
<표 3-68>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92
<표 3-69>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	93
<표 3-70>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93
<표 3-71>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조례를 통한 예산 출연 및 지원 예시	94
<표 3-72>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94
<표 3-73>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실효성이 없는 조례명 및 내용	95
<표 3-74>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96
<표 3-75>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96
<표 3-76>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97
<표 3-77>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97

<표 4-1>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일괄개정입법방식	101
<표 4-2>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 예시	102
<표 4-3>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108
<표 4-4>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생활인구 유입 촉진 지원 조례	115
<표 4-5>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121

<그림 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필수조례 정비 현황	19
<그림 1-2>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연구의 내용	22
<그림 2-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국회 제안건수 및 반영건수	27
<그림 2-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의 목적	31
<그림 2-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34
<그림 2-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 정비 기준	47
<그림 3-1> 필수조례 정비 - 필수 자치법규 현황 확인 탭(법제처 제공)	84
<그림 3-2>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사업 시행 여부 확인 절차	95
<그림 4-1> 신규 조례 제안 - 2025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중간 성과공유회	107
<그림 4-2> 신규 조례 제안 - 생활인구 조례 예시(남원시)	114
<그림 4-3> 신규 조례 제안 - 생태관광 조례 예시(제주특별자치도)	120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개요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1) 자치법규의 의미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에 관해 규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의미함
 - 지방자치만의 조례 및 규칙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을 자치입법권이라고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특정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음
- 자치법규의 입안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상황을 반영하고 분석하여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의 의미도 갖는 다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자치법규 관계 법령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 3요소로서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사무를 국가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
-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기능
-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기능

나. 「행정기본법」

-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의 입법활동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표 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 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명시한 법률로 제1장 제3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3장은 조례와 규칙, 제5장은 지방의회, 제6장은 집행기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음

〈표 1-2〉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라. 그 밖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 그 밖에 자치법규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음
- 강원 지역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있음

〈표 1-3〉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치법규 현황

1) 자치법규 일반 현황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현행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음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도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스스로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며 정책 실현을 위한 권한 행사이기도 함
- 2025년 말 자치법규는 총 153,423건이며 이 가운데 조례가 126,072건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5년 46,551건 대비 약 3배 이상 규모가 증가하였음

<표 1-4>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2025년 자치법규 운영현황

구분	2024년 말			2025년 말			증감			평균
	합계	조례	규칙	합계	조례	규칙	합계	조례	규칙	
합계	145,671	118,431	27,240	153,423	126,072	27,351	7,752	7,641	111	631
광역시(17)	17,556	14,909	2,657	18,804	16,128	2,676	1,238	1,219	19	1,106
기초(226)	128,105	103,522	24,583	134,619	109,944	24,675	6,514	6,422	92	596

자료 : 법제처 발표 2025년 자치법규 운영현황(2025. 12. 31. 기준)

- 시·군·구의 평균 자치법규 수는 596건이며 평균 조례 수는 486건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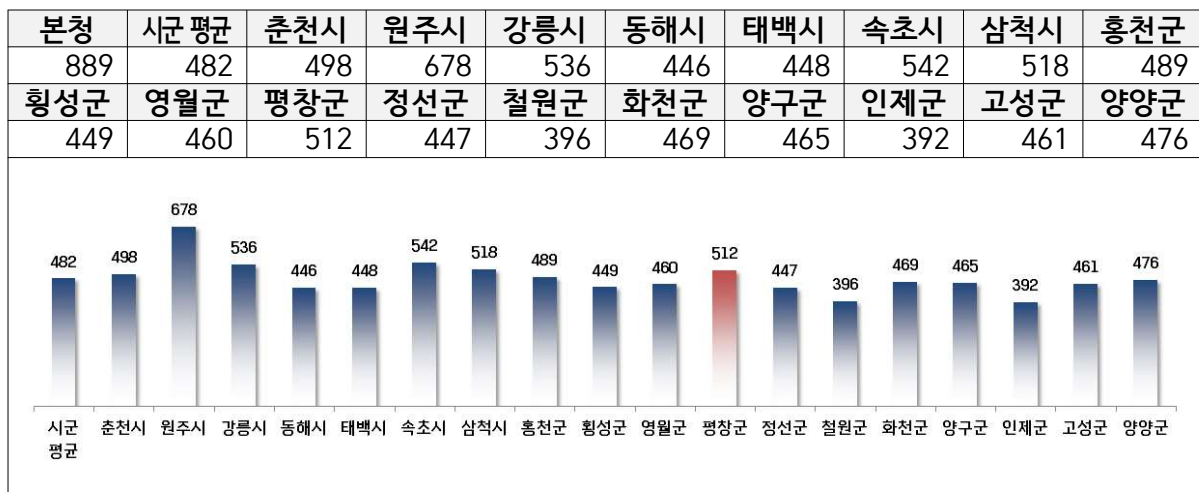
<표 1-5>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2025년 평균 자치법규 수

구분		평균 자치법규		
		합계	조례	규칙
합계		631	519	113
광역시(17)	시(8)	1,027	873	154
	도(9)	1,176	1,016	161
기초(시·군·구)(226)		596	486	109

자료 : 법제처 발표 2025년 자치법규 운영현황(2025. 12. 31. 기준)

-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512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삼척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임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원주시(678건),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인제군(392건)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은 482건임

<표 1-6>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현황(단위 : 건)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 4. 13. 검색 기준

- 인구 규모 유사 지역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 규모 유사 지역의 조례 평균인 437건보다 75건 많은 수준임
-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상위 법령의 빠른 변화 등으로 전문 인력의 입법 보완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임

<표 1-7>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인구 규모 유사 지역 조례 현황(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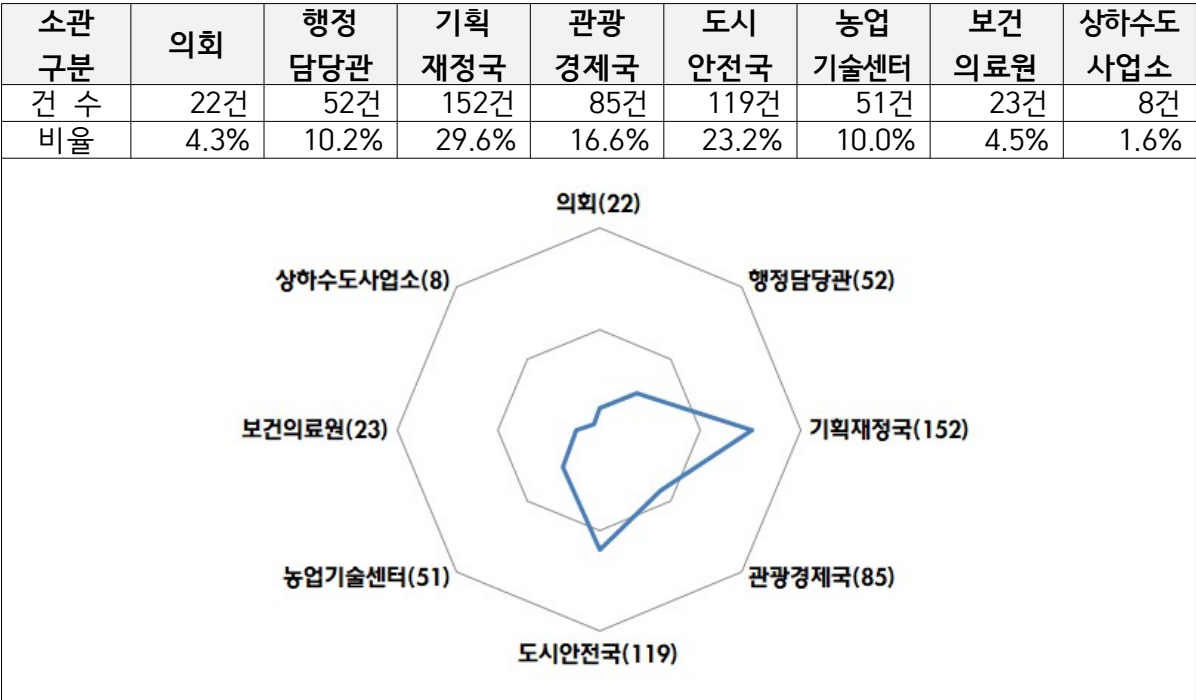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 4. 13. 검색 기준

2) 소관부서별 현황

○ 평창군의 자치법규를 소관부서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획재정국으로 29.6%를 차지하며 이어서 도시안전국(23.2%), 관광경제국(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8>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소관부서별 조례 현황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 4. 13. 검색 기준

3) 특별회계 및 기금 조례

○ 평창군의 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총 4개로 수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는 1개,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는 3개에 해당함

<표 1-9>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평창군의 특별회계

구 분	명 칭
공기업특별회계	평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타특별회계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 4. 13. 검색 기준 (조례만 명시, 규칙 제외)

- 기금은 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별로 도시안전국 2개, 기획재정국 2개, 보건의료원 1개, 농업기술센터 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

<표 1-10>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평창군의 기금 설치 현황 및 설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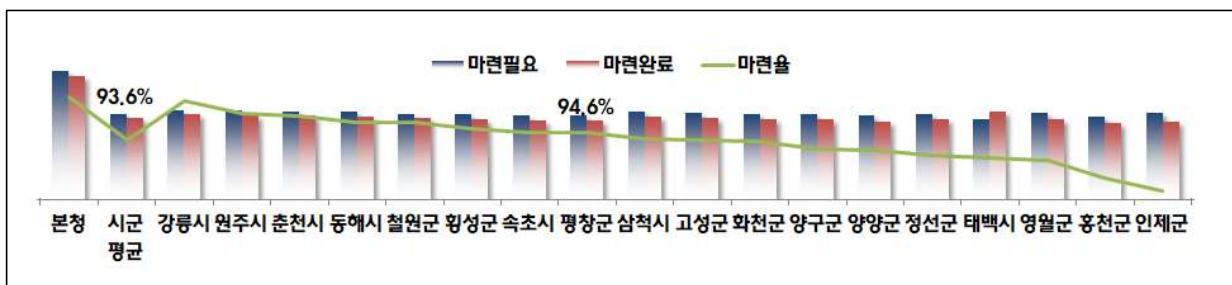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 효율적 활용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획재정국
재난관리기금	2011년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도시안전국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15년	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업기술센터
옥외광고발전기금	2015년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시안전국
식품진흥기금	2010년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재원 충당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보건의료원
자활기금	2021년	자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획재정국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6. 4. 13. 검색 기준

4) 필수조례와 임의조례

- 필수조례는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대비되는 개념임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따르면 평창군의 필수조례는 257건으로 그 중 243건이 마련되어 94.6%의 정비율을 보여주며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평균인 93.6%보다 높은 수준의 정비율임

<그림 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필수조례 정비 현황



3. 연구목적

1) 자치법규의 완결성 보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정책의 심사평가 및 결정·집행 등을 통해 자치 행정을 주도해 오면서 입법미비 사항 등을 꾸준히 보완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으로 자치 입법역량 요구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임
- 이와 같이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원 한계로 인해 입법 완결성이 부족한 조례들이 생겨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입법 완결성이 부족한 조례를 발굴하여 이를 보완하여 불합리하거나 불완전한 자치 법규가 초래할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평창군의회 의정활동의 근거를 탄탄하게 하고자 함

2)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의 필요성

-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 법규는 입법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맞추어 꾸준한 최신화가 이루어져야 함
- 상위 법령이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나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경우, 내용이 변경되어 상호 모순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점검을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현행 조례와 상위 법령의 체계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적 안정성과 효율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본 연구는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현행 조례 501건을 대상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설정함

2. 연구의 내용

1) 자치법규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평창군의 현행 조례 501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목적, 근거 법령, 조례의 특성, 조례의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함
- 또한 자치법규를 소관부서별, 위임/자치조례, 필수/임의조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과정을 통해 평창군 자치법규의 내용 및 특성과 실효성 등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

2) 필수조례 마련 여부 파악

- 상위 법령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을 파악하여 평창군의 입법 공백 실태를 살펴봄
- 평창군에 필요한 조례, 중복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련되지 않은 필수조례임에도 자치법규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평창군에 맞는 조례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3) 개별조례 점검

- 법제처의 관련 자료들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별 조례의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의 미반영 사항,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개별 조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4) 모범조례 제시

- 법제처는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법제상황을 분석하고 법제처의 자문을 통해 개선된 조례 규정과 자치법규, 우수 조례 사례 등을 발간하고 있음
- 이를 참고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균형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평창군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 및 고안하여 제시하고자 함

<그림 1-2>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1) 입법체계와 기본원칙의 이론적 검토

- 법령과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와 입안의 기본원칙 및 기준 등의 이론적 검토를 위해 관련 논문과 선행 연구를 참고함
- 특히 모든 입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상위 규범의 합치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논리성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입법 과정에 있어 자치법규는 그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원칙들을 확인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비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문헌검토 및 사례 분석

- 법제처의 권고안, 이미 자치법규를 정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참고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방향을 설정함
- 우수정비사례와 우수 조례 등을 참고하여 평창군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표 1-11> 자치법규의 의미와 관계 법령 - 법제처 발간 자료

2장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제1절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및 분석틀

제2절 자치법규 입안 기준

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제1절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및 분석틀

1.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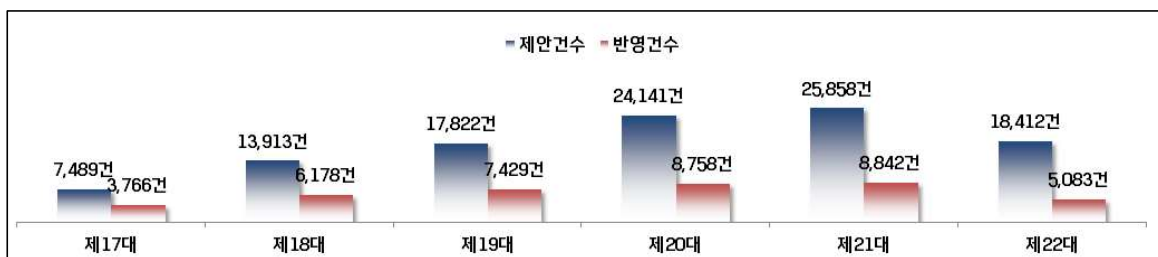
1) 행정 효율성 제고

- 자치법규가 시대적·사회적 환경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자치법규는 비효율적이거나 복잡하거나 불합리해질 수 있음
- 자치법규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른바 사문화(死文化)된 법이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현실 상황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는 것이 중요함

2) 상위법령 준수 및 정비

- 법률안 제안건수는 제18대 국회에 들어서 10,000건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제22대 국회는 2024년 5월에 임기를 시작하여 현재 임기 중에 있음

<그림 2-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국회 제안건수 및 반영건수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2026. 5. 11. 기준)

-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규제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가 급증하기도 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법령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음

3)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는 개정되지 못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상실된 사문화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집행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법규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 효율성 저하와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현실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울 필요가 있음

4)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인구 구조, 경제 환경,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시행되는 것이 본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임
- 과거부터 이어진 자치법규는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거나 상위법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쳤음
-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법률이 담당하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위임 조례뿐 아니라 추가적인 자치법규 입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정부와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파프리카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를 선보입니다! 2024년 3월 4일 (월) 07:30 운행 개시! Far Free Car 파프리카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구역 운정산도시(운정, 교하 중고등학교(18개교) 순환운행 이용대상 모든 중·고등학생(청소년) 자유롭게 이용가능 이용요금 파주시 마을버스 청소년요금(950원), 환승가능 운행형태 순환형 2노선, 노선당 5대, 일일 대당 4회 운행, 57점 동시 출발 노선번호 U1 U101, U102, U103, U104, U105 U2 U201, U202, U203, U204, U205 운행시간 등교 : 1회(07:30) / 하교 : 2회(15:00), 3회(16:40), 4회(18:25)	 문제를 겪은 전국에게!! 언제 어디서나 기다라지 않게!! 소통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보성 600개 마을에서 군수에게 바로 문자 군수 직통 문자폰 010-5438-0600 (50대, 40대, 30대, 80대 누구나 600개 마을에서) 운영시간 평일 9시 ~ 18시 대 상 보성군민 누구나 처리기한 입당부서 검토를 거쳐 2일(48시간) 이내 답변 소통내용 도로교통, 공원녹지, 청소환경, 주택건축, 군민제안
파주 Far Free Car - 통학 문제 해결 사례	보성군 소통600 문자한통 - 문자 서비스 법적 정립 사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에 냉난방기 설치공동추진 사업내용 • 폭염·한파 대비 냉난방시설 설치 (인당 150만원, 총 600여명 지원)	 "임산부는 국가유공자"...충북도 예우 조례 내년 발효 충북 2023.10.25 10:41:01 [청주=뉴스시스] 이병찬 기자 = 내년부터 충북 지역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받는다. 지난 20일 '임산부 예우 및 출생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등이 참가한 도민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 기후격차 해소 최초 제정	충북 임산부 예우 관련 조례 - 임산부 사회적 우대 선도

<표 2-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분석틀

-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가 확대되면서 자치법규의 양적 증가로 인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집행을 둘러싼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질적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법제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자치입법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이 궁금하거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자치입법의 입안과 해석에 관련된 법리적인 의견을 제공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 어법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비안을 제공
 - 필수조례 제때 마련 : 법령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문과 소식지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조례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이에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안과 정비를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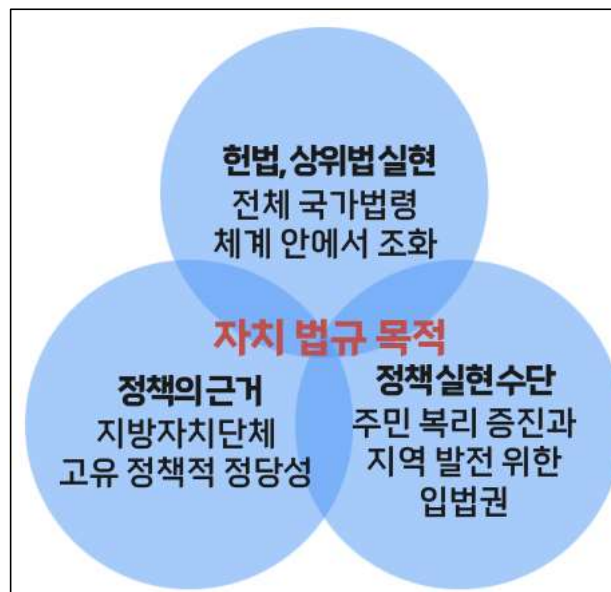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2020)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023)
- 자치법규 Q&A (2023)
-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024)
-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6)

<표 2-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 지원 발간 자료

제2절 자치법규 입안 기준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
- 이는 지방의 사무에 대해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책임을 갖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함임

<그림 2-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의 목적



- 자치입법 권한의 행사를 위한 활동은 전체적인 국가 법령체계에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하고 상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함
-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법령의 목적 또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세부 입안 원칙을 정리하고자 함

1) 입안의 기본원칙

(1) 소관사무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로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음

<표 2-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구분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7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이 가운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47)
- 따라서 소관사무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체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시·도의 조례로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해 정하거나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시·도의 사무에 대해 정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음

(2) 법령 우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해야 함
-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함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부정하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함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고 판시함(헌법재판소 1992. 6. 26. 결정 91헌마25 결정례)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때의 법령의 범위는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며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및 저촉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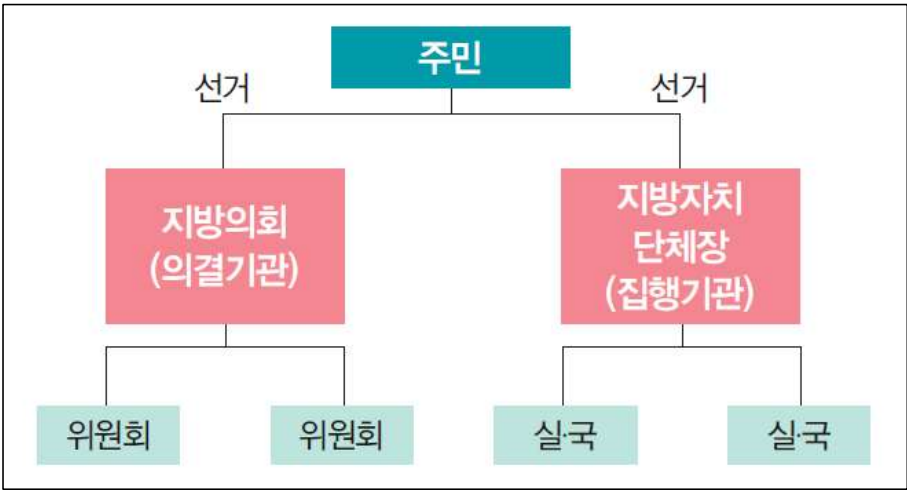
(3) 법률 유보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나 벌칙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신설하거나 정년제한, 의무사항 신설 등과 같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
- 동시에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권행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2-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견제 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음

(5) 법의 일반원칙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표 2-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헌법 제37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임
-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이 합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법목적의 정당성 : 법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해야 함
 -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 피해의 최소성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 중 가장 피해가 적은 규모의 수단을 선택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나. 평등의 원칙

- ‘평등의 원칙’은 ‘법 적용’과 ‘법 내용’에 있어서 모두 평등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임
 - 이는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항상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합리적’이란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목적의 실현에 있어 차별이 실질적 관계에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절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혹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지 않아야 함
 - 이는 지원의 경우보다 영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됨

<표 2-5>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은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구법(舊法, 개정 이전)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신법이 소급효(遡及效)를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 이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입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 금지이지만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고 있음

<표 2-6>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법의 성격	적용 내용	예외
침해적	원칙적 금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종결되지 않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적용하는 입법에 대해 허용될 수 있음
수익적	비교적 넓게 인정 (종합적 고려)	차별의 근거가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금지

라. 적법절차의 원칙

- 입법·사법·행정 등의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있어 필요한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개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마. 체계정당성의 원칙

- 동일 규범 내에서나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 혹은 근거가 되는 원칙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함
- 이는 규범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항상 기존 법과 조화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함

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중요사항을 정하되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함
-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한 자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여 조례에서 규칙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세부 입안 원칙

(1) 개요

-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자치법규의 제명, 총칙, 본칙, 부칙으로 구성됨
 - 제명 :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
 - 총칙 :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부분
 - 본칙 : 자치법규가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
 - 부칙 :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함
 -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규정내용이 기술적, 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 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함

(2)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표 2-7>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예시

제 명	○○군 ○○○○ ○○○○에 관한 조례안
본 칙 (법령의 본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1.
	2.
	3.
	제4조(단체장의 책무) ①
	②.....
	제5조(적용범위).....
부 칙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
	제7조(기본계획) ①
	②.....
	제8조(위원회) ①
	②.....
	제9조(보조출연) ①
	제3장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3) 총칙

가. 목적

-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하며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목적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이 목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목적 규정은 개별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의 기능을 함

- 목적 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며 둘 이상의 조문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음
- 특히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국민들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만약 약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처음으로 해당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약칭하도록 함

나. 기본이념

-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법령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임
 - 목적 규정에서 법령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만 법령 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려는 경우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

<표 2-8>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입법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기본이념 규정의 제목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혼재되어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이념)”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상위 법령과 관계없이 제정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조례의 경우에는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적 규정 다음에 규정하고 있음

다. 정의

- 정의 규정은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은 가능한 정의를 같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용어를 재정의하지 않도록 함
- 정의 규정의 제목은 “(용어의 정의)”등으로 작성하지 않고 “(정의)”라고 간결하게 표기함
- ‘항’으로 구분하지 않고 ‘호’로 구분하며 규정하며 “(이)라 함은”은 사용하지 않고 “(이)란”으로 간결하게 표기함
-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의하려는 용어가 법령의 어느 일부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에서 정의함
 - 비교적 간단한 용어는 해당 조문에서 괄호로 표시하여 용어를 정의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둔 것임
- 다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

마. 적용범위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임
- 법령의 전부나 다수의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 총칙 규정에 두지만 특정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위치함

<표 2-9>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특정 조항 한정 광업법 입법례

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적용 범위)”로 통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총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부칙 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함
-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적용과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보다 우선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본칙(규정 내용)

가. 보조·출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 보조금이라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함
-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 보조재원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출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출연자 혹은 출연기관은 재산상 손실을 보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함
- 출자 또는 출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출연하는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표 2-10>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을 명시하고 있음

<표 2-11>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생략)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규율이 불가능함

<표 2-12>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		정 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 공유재산의 관리 등을 자치법규로 정할 때에는 개별 법령상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장의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 등도 있음

다. 특별회계/기금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됨
-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혹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함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나 기금 외에는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

라. 위원회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함

<표 2-1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위원회 입법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눔
 -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 :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짐
 -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 :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함
 -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 :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
-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도 소관 사무의 원칙, 위원회 설치요건, 위원회의 성격 및 상위법령,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는 등 일반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겨 수임기관·수탁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위임 :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의 형식으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함
 - 법령에 규정이 없는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띠는 사무는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민간위탁이 불가능함

〈표 2-1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치법규 정비 기준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요

- 법제처는 법제업무 중 하나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 이전은 하위법령의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옴
- 200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 2015년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까지 확대하였음

<표 2-15>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주요 연혁

구 분	내 용	비 고
2005년 이전	하위법령 한글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중점	
2006년~	본격적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2013년~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 시작	
2014년~	법령용어 기획정비 추진	
2015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및 표준 조례안 검토	
2018년~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법령·행정규칙 사후 정비 실시	
2021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법령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쉽게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2023년~	법령 문장과 체계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 추진	

-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을 지향하여 일본식 표현 및 한자어 표현 등을 점검할 뿐 아니라 차별적인 단어, 전문적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등의 정비를 추진해 왔음
- 본 연구는 법제처의 기준을 참고하여 조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나. 용어의 정비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어려운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고쳐 쓰되 고쳐쓰는 경우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함

- 직역된 일본어 식의 표현을 포함한 외국어와 외래어도 우리 말로 바꿔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 차별성이 있는 용어나 권위적인 용어 또한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씀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 규정에 맞게 고침

다. 입법체계 정비

- 제명, 총칙, 본칙, 부칙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 속에서 각 규정의 원칙을 반영 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본칙의 규정이 상위 법령 또는 같은 조례 안에서의 다른 내용과 충돌 하지 않도록 수정 및 삭제하는 정비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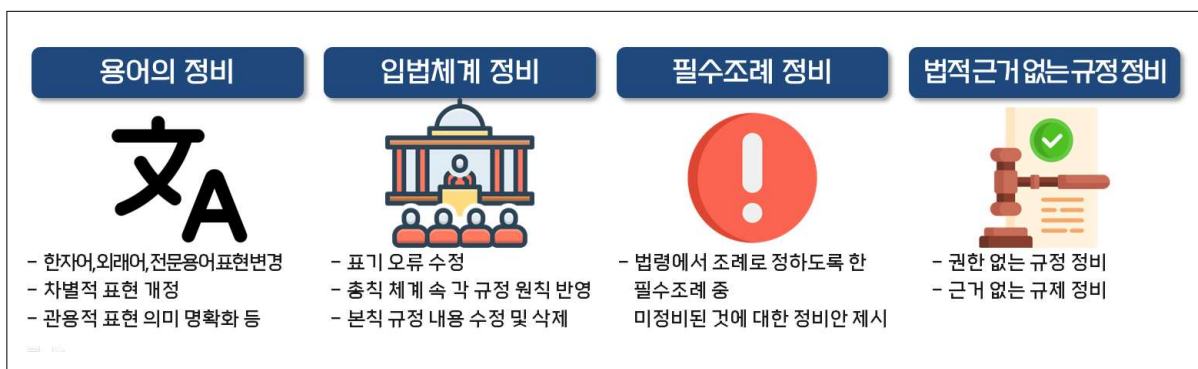
라. 필수조례 정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필수조례 중 미반영 혹은 미정비된 것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함

마.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주민에게 벌칙이나 의무 등을 부과한 규정 등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함

<그림 2-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기준 - 자치법규 정비 기준



3장

분석결과

제1절 용어의 정비

제2절 입법체계 정비

제3절 필수조례 정비

제4절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제5절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3

분석결과 <<

제1절 용어의 정비

1.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거나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적음
- 어려운 한자어는 법령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의무교육을 받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때 ‘어렵다’는 기준은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함
- 정비 대상 조례와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표 3-1> 용어의 정비 -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개류 → 계류 (繫留 :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 (1건)	▶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제3조
예납 → 미리 지급하여 (1건)	▶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제4조
청인 → 관인(官印) (1건)	▶ 평창군의회공인조례 제2조 ①, 제3조 ①, 제7조 ①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인영 →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 (1건)	▶ 평창군의회공인조례 제3조 ①, ②
익년도 → 다음 해 (1건)	▶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쟁송 → 쟁송(爭訟) (1건)	▶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4조 ②
익일 → 이튿날 (1건)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11조
망실 → 분실 (4건)	▶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② 2. ▶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②, 제22조 ②
제고하는 것 → 높이는 것 (1건)	▶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
호선 → 서로 선출 (13건)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②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제5조 ②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②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6조 ③ ▶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③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 ②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② ▶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② ▶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② 1. ▶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7조 ③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호선 → 서로 선출 (13건)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제20조 ⑧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②
일할 → 일 단위 (2건)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7조
동정 → 동정(同定 :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1건)	▶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
수계 → 수계(水系) (1건)	▶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1., 3.
용수원 → 용수원(用水源) (1건)	▶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 ②, 제6조 ①, 제7조 ① 1., 2., ②, 제8조
구경 → 구경(口徑) (1건)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 5., 6, 제5조 2., 제11조 제5항

2.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 법제처는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어감을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표현 또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용어, 권위적인 용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도록 함
- 또한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옛말 투나 번역 투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 또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권고함
- 정비 대상 조례와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표 3-2> 용어의 정비 -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회무 → 위원회의 사무 (1건)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계도 → 교육 (1건)	▶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6조 ③ 2.
창달 → 발전 (1건)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6., 제13조, 제14조
통할 → 총괄 (1건)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②,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내지 → ~부터 ~까지 (2건)	▶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 ② ▶ 평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3.

3. 전문용어

- 전문용어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등이 많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익숙한 말이라도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말이므로 쉽게 고쳐 쓰는 것이 좋음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3-3> 용어의 정비 - 전문용어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성토부 → 성토부 (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함) (1건)	▶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 5.
절토부 → 절토부 (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함) (1건)	▶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 5.
측대 → 측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함) (1건)	▶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대상 단어→ 권고안	정비대상 조례
평정 가격 → 평가액 (1건)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4조 ①, ②
구거 → 구거(溝渠 : 도랑) (1건)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7조 ④
실지조사 → 현장조사 (1건)	▶ 평창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신고필증 → 신고확인증 (1건)	▶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제4조
관정 → 관정(管井 : 우물) (1건)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2조
집수암거 → 집수(集水) 도랑 (1건)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2조
시방서 → 작업설명서 (1건)	▶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2.
평정 → 평가 (1건)	▶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 ②

4. 차별적 표현

1) 심신장애

- 심신장애(心身障礙)는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의 총칭으로 과거 법률이나 자치법규에서 정신적·신체적 결함을 통틀어 부르던 용어임
- 자치법규 상에서 위원회 의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는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정비되었음

<표 3-4>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현 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장기간의 심신쇠약</u>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5. (생략)

<표 3-5> 용어의 정비 -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u>장기간의 심신쇠약</u>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표 3-6>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장기간의 심신쇠약</u>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표 3-7>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u>장기간의 심신쇠약</u>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2) 저출산

-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책임을 한 성별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2019년
권고하였으며 세종시와 대구시, 전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으로
개정한 바 있음

<표 3-8> 용어의 정비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u>저출산</u>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u>저출생</u>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9>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u>저출산</u> 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u>저출생</u> 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등급

- 201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부여되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급~6급)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따라서 법률 용어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표 3-10> 용어의 정비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장애등급</u> 1~3급에 한함)	제10조(관람료)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함</u>)

<표 3-11> 용어의 정비 -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정도</u>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강사료

- 법제처는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또한 용어 정비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강사료는 직업명과 비용을 합성한 용어로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성을 지닌 용어로 정비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표 3-12> 용어의 정비 -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8조(수강료 및 강사료) ① (생략) ② 위촉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u>강사료</u> (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료 및 강사료) ① (생략) ② 위촉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u>강의료</u> (이하 “강의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료증 및 사후관리) ① ~④ (생략) ⑤ 수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u>강사료</u> 의 지급명세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및 사후관리) ① ~④ (생략) ⑤ 수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u>강의료</u> 의 지급명세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해당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 4. (생략) 5. 교육장소 대여료 및 <u>강사료</u> 지급 세부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해당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 4. (생략) 5. 교육장소 대여료 및 <u>강의료</u> 지급 세부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수탁자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선정절차·방법, 해당 위탁 기간 및 재위탁, 위탁 경비 보조 및 <u>강사료</u> 지급의 회계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수탁자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선정절차·방법, 해당 위탁 기간 및 재위탁, 위탁 경비 보조 및 <u>강의료</u> 지급의 회계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 등에 따른다.

5) 자매결연

- 자매결연 역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상하 수직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호결연’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음

〈표 3-13〉 용어의 정비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외 도시 간 <u>자매결연</u>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u>자매결연</u>”이란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이란 국내·외 도시 간 <u>자매결연</u>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혀 양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주로 교류 초기단계에서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2. “<u>상호결연</u>”이란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중장기계획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모든 현황과 국제화 기반시설 파악, 내부공무원 및 주민·사회단체의 교류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류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전략
제7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u>자매결연</u>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u>상호결연</u>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내·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u>자매결연</u>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 4. (생략)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국내·외 도시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도농교류,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u>상호결연</u>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 4. (생략)
제18조(<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 체결) ①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③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언어별 2부씩 작성·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 체결) ① <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③ <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언어별 2부씩 작성·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u>상호결연</u>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u>자매결연</u>협력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u>자매결연</u> 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자치단체·도시와의 <u>자매결연</u> 협력을 취소할 경우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u>상호결연</u>협력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u>상호결연</u> 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자치단체·도시와의 <u>자매결연</u> 협력을 취소할 경우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입법체계 정비

1. 법제 형식

1) 법제 띄어쓰기 미반영

- 그동안의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령문 표현’이라 하여 법제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므로써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며 가독성이 떨어져 일반 국민의 이해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음
- 이에 법제처는 그간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2005년부터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추진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직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평창군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권고함

<표 3-14> 입법체계 정비 - 법제 띄어쓰기 정비

구분	현행	개정안
1	평창군민의날조례	평창 군민의 날 조례
2	평창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평창군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3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평창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4	평창군의회공인조례	평창군의회 공인 조례
5	평창군기조례	평창 군기 조례
6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 가입조례	평창군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
7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평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8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관한조례	평창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9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조례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

구분	현행	개정안
10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11	평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평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12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13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평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14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평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2) 기타 변동으로 인한 법제 정비

- 평창군의 가족서비스 제공 기관인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은 지역 내 모든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2021년 ‘평창군가족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되어 왔음
- 하지만 센터의 운영 근거인 「평창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여전히 이전의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의 명칭으로 조례의 개정이 요구됨

〈표 3-1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현행	개정안
법제	평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총칙 규정

1) 목적 규정

(1) 약칭의 사용

- 목적 규정은 제1조에 두어야 하며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활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함
- 따라서 목적 규정에 약칭 또는 약칭된 용어를 사용한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3-1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 또는 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u>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이나 군수 또는 그 산하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표 3-1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u>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u> 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u>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표 3-1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u>주민 명예감독관</u> (이하 <u>명예감독관</u> 이라 한다.)의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u>주민 명예감독관의</u> 참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1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u>출장소장</u> (이하 “ <u>읍·면장</u>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평창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u>출장소장에게</u>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0> 입법체계 정비 -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2> 입법체계 정비 -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u>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 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u>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u>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이</u>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u>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u>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u>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u>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평창군수가</u>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표 3-2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목적 규정 개정

-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목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표 3-2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임조례

- 법제처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조례의 경우 위임조례임을 목적 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로 자치조례는 위임 조례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임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조례임을 목적 규정에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조례 및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조례로 검토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표 3-2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도로법</u> 」 제11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2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산업안전보건법</u> 」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평창군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 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12조에서 제13조,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2> 입법체계 정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u> 」 제3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세기본법</u> 」 제146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3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u>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u> 」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정의 오류

- 정의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조례 안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사용함
 - 정의규정은 제2조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경우 제3조에 위치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

<표 3-35> 입법체계 정비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가부 등
(질문)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여도 무방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헌법을 중점으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조례 등이 상하간 위계체계를 이루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자치법규나 일부 부처의 훈령·예규 등에서 당해 하위법령의 이해편의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중복 규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입안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법제처 알기쉬운 법률입안상식 Q&A

- 다만 예외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복잡하여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의규정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등의 예외적인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함
- 또한 법제처는 정의규정의 제목을 “(정의)”라고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정의하는 용어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자치법규 정비 연구에서 검토한 정의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3-3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의 규정의 경우 기본 이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3조에 위치하여 순서의 변경이 필요하며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복잡하여 예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의 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3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위치)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삭제> 제3조(위치)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에 둔다.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경우 제2조 제1항의 경우 상위법인 「도로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의 무단점용 가운데 특정 행위를 말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됨

<표 3-3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 (생략)	제2조(정의) ① <삭제>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 (생략)

<표 3-3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삭제>

<표 3-4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2. ~ 3. <삭제>

<표 3-4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삭제>

- 법제처는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는 따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조례는 다음과 같음

<표 3-42>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 아.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삭제> 3. (생략) 4. <삭제>

<표 3-4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삭제>

3) 단체장 등의 책무 표기

- 단체장 등의 책무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임
- 단체장 등의 책무 및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에 관한 규정은 목적규정과 기본이념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에 위치하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규정보다는 앞에 두도록 함
- 규정의 제목은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책무의 주체가 단체장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조의 제목에서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평창군 조례 가운데 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조례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표 3-4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표 3-4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8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3조로 이동)

4) 적용 범위 표기

-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을 말함
- 총칙부분 중 목적규정, 기본이념규정, 정의규정 등의 다음에 두되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규정보다는 앞에 두도록 함
-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 범위)”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음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제3조는 적용범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것은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와의 관계만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표 3-4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조례의 총칙부분에 두되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두어야 함
-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에서는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표현함

<표 3-4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2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2조의2로 이동)

3. 본칙 규정

1) 상위 법 반영

- 상위 법령 혹은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은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간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국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함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는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은 조례임을 명시하는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4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3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생략)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역시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의 용어에 맞게 ‘행정정보의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표 3-49>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략)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략)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50>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생략)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생략)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51>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6조(운영의 위탁) ④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④ 수탁자는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내용도 개정되어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별표 또한 개정이 필요함

<표 3-52>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생략)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또는 수의 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생략)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또는 수의 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에서는 본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간사를 군 소속 공무원 가운데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지방 산림청장이 지명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53>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11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생략)	제11조(간사) ① <삭제> ② (생략)

2) 위원회의 업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실무 업무 등을 심의기능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 고유의 권한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행정기관의 실무 업무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이 포함됨

<표 3-54>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3) 법률의 근거 없는 군민의 의무 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의무 부과 조례는 주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임
-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 또한 대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주민에게 추상적인 노력의무나 책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해당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역시 제7조에서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표 3-55>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삭제>

4) 상위 법률과 용어 통일

- 법제처에서는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게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상호 간 용어를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의 “자유발명”은 상위 법률인 「발명진흥법」에 따라 “개인발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표 3-56>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 6. (생략) (생략)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삭제> 3. ~ 6. (생략) (생략) 제21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5) 위임 사항에 관한 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군수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및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표 3-57>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소의 신설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용평지소가 신설되어 제3조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3-58> 입법체계 정비 -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u>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u>	제3조(배양센터의 위치) <u>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2(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용평지소는 용평면 새터마을길 4-23에 둔다.</u>

제3절 필수조례 정비

1. 미마련조례 현황

- 평창군은 2026년 4월 초 기준 법령에서 조례로 마련하도록 한 필수조례 대상 257건 중 243건을 마련하여 94.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미 평창군의 자치법규에 반영이 됐으나 정비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법규가 4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로 존재하는 것이 2건, 중복 1건, 입법예고된 것이 1건으로 총 8건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례로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반영이 필요함
 - 법제처는 필수조례 정비 지연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백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정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
- 법제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이 99.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자치제비 마련현황 합동평가 대상 부처별 선택 법령명 선택 오류자손 선택				
전체 62824건 중 58950건(93.83%) 완료				마련 대상 위임 법령 수 : 797 건		
순번	소관부처	법령명	조문	자치법규 마련현황		
				미완료	완료	계
1	문화체육관광부	2018 말갈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건국공헌의 함성)	1	1	2
2	기후에너지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2	2
3			제4조(가축발역심의회)		16	16
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가축전염병예방비보상심의회 구성 등)	1	15	16
5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1	1
6			제13조(규제자유화의 추진)		1	1
7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1	1
8			제90조(배거거주권 책정)		1	1

<그림 3-1> 필수조례 정비 - 필수 자치법규 현황 확인 탭(법제처 제공)

○ 중복을 제외한 정비 대상 13건의 자치법규 정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3-59> 필수조례 정비 - 마련되지 않은 자치법규 목록

법령명	법령조문	시행일	해당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 의회의 의견청취)	'24. 7. 27.	완료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8조)
	제70조의1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25. 10. 2.	정비 필요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8. 4. 19.	완료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52조)
	제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7. 9. 22.	완료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55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 (과태료)	'17. 11. 25.	정비 필요 (조례 제정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23. 10. 19.	완료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57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26. 3. 27.	완료 (입법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24. 2. 17.	정비 필요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6. 3. 17.	정비 필요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필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26. 1. 1.	정비 필요 (회계 규칙 신설 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26. 1. 1.	불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존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22. 4. 28.	불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존재)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18. 1. 16.	정비 필요 (조례 제정 필요)

2. 미마련조례 정비(안)

- 공무원 인사 규칙,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제외한 정비 대상 4건에 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음

<표 3-60>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및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61>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대상지역 및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주변 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표 3-62> 필수조례 정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1. 1차 위반: 500만원
2. 2차 위반: 7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63>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64>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표 3-65> 필수조례 정비 - 평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으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을 포함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와 학교, 청소년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절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신설할 수 없다고 명백히 함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부과 사유로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함

<표 3-66>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 4. <삭제>

-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역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는 특정 내용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익적 내용이라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침익적 내용이라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는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일반적인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상위 법률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표 3-67>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회의 조례

현 행	개정안
제3조(정관) <u>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u> 1. ~ 8. (생략)	<삭제>
제9조(재정) ① <u>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u>	
② <u>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신설로 연합협회의 설립이 가능해졌음
- 하지만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2조 제2항에서 여전히 연합협회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침익적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함

<표 3-68> 법적 근거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u>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생략) ② <u>협의회는 강원도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강원도지사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

제5절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1. 상위 법령 제정 및 개정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효용성이 낮아지거나 환경이 변화할 때 내용을 개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있어 조례도 이에 맞춘 변화가 이루어져야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과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 지급기준을 별표 1의2에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는 별도로 공수의의 여비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규정이 발생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69>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

(현행)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제1조(목적) (생략)	평창군공수의여비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3조(준용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평창군을 포함한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평창군의 해당 조례는 폐지가 필요함

<표 3-70>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현행)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생략)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단 폐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라는 법적 근거를 통해서만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표 3-71>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조례를 통한 예산 출연 및 지원 예시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출연 등) ①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생략)

- 하지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단이 해산될 경우 지원을 규율할 조례의 필요성 역시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례 또한 폐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설립 허가를 받고 개소하여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직판장 전시장 등을 운영하는 등 광고와 지역 홍보활동, 이외에도 연구용역과 지역진흥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온 재단임
- 하지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2020년 공식 해산에 이르러 평창군의 해당 재단 지원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72>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현행)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생략)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원 사업의 변경

- 조례를 비롯한 법규의 기능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역할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 제안하고자 66개의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전수조사하였음
 - 평창군의 해당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을 확인한 이후,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그림 3-2>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사업 시행 여부 확인 절차

- 지원 사업 전수조사 결과 타 사업으로 변경 및 통합되어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4건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조례는 다음과 같음

<표 3-73>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실효성이 없는 조례명 및 내용

조례명	소관부서	기존 지원 내용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 기술 센터	저소득 농업인에게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일정 비율 이내 지원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농업인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 안전국	한옥 소유자 등에게 건축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 담당관	평창군 청년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청년 단체 지원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참고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현재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으로 통합 및 이전 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3-74>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저소득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농기계 구입(병해충방제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등) 2. 농업용 자재구입(과수 지지대, 비료 및 농약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①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② (생략)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3-75>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현행)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4조(대상사업)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제5조(이자보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체이자 제외한다.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한옥 소유자 등에게 건축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련 부서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이 현재는 실시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76>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9조(건축 등 지원) ① 군수는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건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청년기본조례」로 통합되어 시행되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77>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조(경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 3.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장

입법 제안

제1절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2절 신규 조례 제안

4

입법 제안 <<

제1절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1. 일괄개정에 의한 조례

-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사용되기도 함
- 일괄개정 방식에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일괄개정입법 추진 방식이 있으며 이중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은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란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괄개정조례안을 사용하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여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칙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 또는 공포 시에는 1건으로 처리되며 공포번호도 1개의 특정 번호를 부여받음

<표 4-1>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일괄개정입법방식

조례 제 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조례의 개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2조(△△조례의 개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괄개정조례안 예시

<표 4-2>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 예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평창군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안에 따라 대체어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류(繫留)를 ‘계류(繫留 :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예납(豫納)을 ‘미리 지급’으로 순화함(안 제2조) 다. 청인(廳印)을 ‘관인(官印)’으로 한자와 함께 표기함(안 제3조) 라. 인영(印影)을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정비함(안 제3조) 마. 익년도(翌年度)를 ‘다음 해’로 순화함(안 제4조) 바. 쟁송(爭訟)을 ‘쟁송(爭訟)’으로 한자와 함께 표기함(안 제5조) 사. 익일(翌日)을 ‘이튿날’로 순화함(안 제6조) 아. 망실(亡失)을 ‘분실’로 순화함(안 제7조~제10조) 자. 제고(提高)를 ‘높이는 것’으로 순화함(안 제11조) 차. 호선(互選)을 ‘서로 선출’로 순화함(안 제12조~제24조) 카. 일할(日割)은 ‘일 단위’로 순화함(안 제27조) 타. 동정(同定)은 ‘동정(同定 :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로 순화함(안 제28조) 파. 수계(水系), 용수원(用水源), 구경(口徑)은 한자와 함께 표기함(안 제29조, 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에서 사용 중인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한자를 함께 표기하여 평창군 조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의 개정) 평창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계류중인”을 “계류(繫留 :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로 한다.

제4조 중 “예납함으로써”를 “미리 지급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평창군의회공인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창군의회청인과”를 “평창군의회관인(官印)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인의”를 “관인(官印)의”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인은”을 “관인(官印)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영은”을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영은”을 “인영(印影 : 도장을 찍은 모양)은”으로 한다.

제4조(「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한다.

제5조(「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쟁송사건을”을 “쟁송(爭訟)사건을”로 한다.

제6조(「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익일부터”를 “이튿날부터”로 한다.

제7조(「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8조(「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망실한 때에는”을 “분실한 때”로 한다.

제9조(「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0조(「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1조(「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고하는 것”을 “높이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한다.

제13조(「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4조(「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의 개정)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5조(「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6조(「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7조(「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8조(「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0조 제2항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19조(「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0조(「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호선(互選)”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1조(「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호선(互選)”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2조(「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3조(「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4조(「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의 개정)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5조(「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호선”을 “서로 선출”로 한다.

제26조(「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일할”을 “일 단위”로 한다.

제27조(「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개정)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할로”를 “일 단위로”로 한다.

제28조(「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분류동정”을 “분류동정(同定 :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로 한다.

제29조(「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수원”을 “용수원(用水源)”으로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조제3호의 “수계별”을 “수계(水系)별”로 한다.

제30조(「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와 제2조제6호의 “구경”을 “구경(口徑)”으로 한다.

제5조제2호의 “구경”을 “구경(口徑)”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의 “구경”을 “구경(口徑)”으로 한다.

제2절 신규 조례 제안

1. 신규 조례안 개요

- 본 연구는 평창군의 현재 상황과 특성에 걸맞으며 기존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생활 인구 유입촉진 관련 조례안,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르신 돌봄 관련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안 조례안 예시

(1)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존 노인 관련 조례안은 노인을 ‘단순 돌봄’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역할을 제한하여 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음
- 경기도에 존재하는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규정하여 후배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함
 - 선배시민 연구,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시행
 -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시행
 - 각종 선배시민 사업의 사례에 대해 성과공유회 주기적 개최



<그림 4-1> 신규 조례 제안 - 2025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중간 성과공유회

<표 4-3>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평창군은 2026년 5월 발표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의 38%를 넘어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초과했으며 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읍·면 간 의료 기관 편차가 크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특성상 노인 돌봄 공백과 건강한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참여 경로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의 존엄한 노후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통합 지원 조례와 더불어 어르신의 사회참여 및 환경 조성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실태조사 의무를 명문화함(안 제5조 ~ 제6조).
- 다. ‘어르신 사회활동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교육을 명시함(안 제7조 ~ 제10조).
- 라. 기존 통합지원협의체와 구분되는 초고령사회 대응 위원회를 규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규정함(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초고령사회 현실에 대응하여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세대 간 통합과 공동체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독거 어르신”이란 혼자 생활하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이 거주하는 어르신을 말한다.
3. “고령친화 생활환경”이란 어르신이 이동, 생활, 의사소통에 불편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4. “사회참여”란 어르신이 지역사회 활동(봉사·문화·교육·공동체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르신 사회활동가”란 자신의 전문 경험과 지식을 지역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수하거나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어르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의 건강, 안전, 사회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5년에 한번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 간 의료·돌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약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르신의 지혜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어르신 의료, 영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는 「평창군 의료·영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②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실태 파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인구 현황 및 사회참여 실태
2.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목표 및 전략
3. 고령친화 공공 인프라 조성 계획
4. 세대 통합 공동체 육성 방안
5. 어르신 취업 및 창업 지원 방안
6. 재원 조달 및 인력 양성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르신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평창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어르신 생활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르신 사회참여 현황 및 희망 활동
2. 고령친화 공공 인프라 이용 실태 및 불편 현황
3. 디지털 기기 활용 현황 및 교육 수요
4. 세대 교류 활동 참여 현황 및 의향
5. 취업, 창업 희망 분야 및 필요 지원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참여 활성화

제7조(어르신 사회활동가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사회활동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르신 사회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1. 지역 청소년 대상 직업 및 인생 멘토링
2. 평창군 전통문화 및 향토 역사 등 전수
3. 농업·임업 분야 귀농·귀촌 멘토링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기여 활동

② 군수는 어르신 사회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외국어, 문화예술 등)
2. 어르신 동아리 및 취미 활동 지원
3. 세대 통합 문화 행사
4. 어르신 건강증진 활동 지원

② 군수는 읍·면 단위 어르신 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2. 소규모 창업(로컬푸드·공예·서비스업 등) 교육 및 컨설팅
3. 지역 내 어르신 협동조합 설립 지원

② 군수는 어르신 취업 및 창업 사업이 군의 주요 산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 역량 강화) ① 군수는 어르신이 디지털 기기와 비대면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2. 비대면 의료, 행정 서비스 이용 실습 프로그램
3. 어르신 전용 디지털 접근성 강화 서비스 개발 권장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지역 내 학교, 도서관, 청소년 단체와 세대 간 상호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은 「평창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기 지원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장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11조(고령친화 공공 인프라 개선) ① 군수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하여는 「평창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1. 읍·면 공공시설 무장애(배리어프리) 환경 개선
- 2.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및 인도 정비
- 3. 공공시설 내 어르신 전용 편의 공간 확보
- 4. 농촌형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노선 버스 미개통 지역 보완)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세대 통합 공동체 활성화) 군수는 어르신과 청년, 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세대 통합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2. 귀농·귀촌 청년과 어르신 간 상호 협력 멘토링
- 3. 어르신·청소년이 함께 하는 지역 봉사 활동

제5장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위원회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 정책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초고령사회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창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지원회의 및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와 역할을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사회활동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 공공 인프라 개선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세대 통합 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르신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2. 사회, 문화, 교육 분야 전문가
3. 지역 주민 및 마을공동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재직 기간에 한정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국비·도비 보조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보고) ①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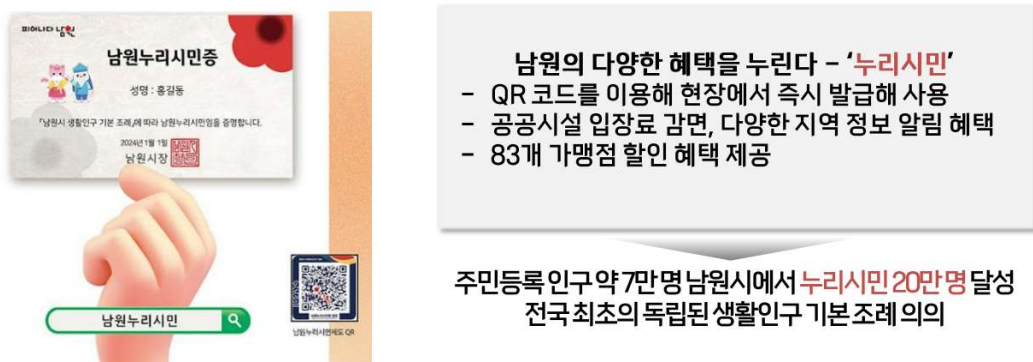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특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특례) 최초의 실태조사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평창군 생활인구 유입 촉진 지원 조례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는 남원의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의 ‘누리시민’으로 생활인구를 정의해 누리시민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였음
 - QR 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여 사용 가능
 -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 다양한 지역 정보 알림 혜택
 - 83개 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
- 전국 최초의 독립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누리시민 프로그램’으로 남원시는 주민등록인구 약 7만 명에서 20만 명의 누리시민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림 4-2> 신규 조례 제안 - 생활인구 조례 예시(남원시)

-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정책지원 조례, 생활인구 기본 조례 등의 관계인구 육성 관련 조례들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의 유형으로 관계인구를 정의하는 한계가 존재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창군 특성에 맞는 세 가지의 유형을 정의하여 제안하고자 함
 - 워케이션
 - 동계스포츠 관계인구
 - 지역활성화 협력체

<표 4-4>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생활인구 유입 촉진 지원 조례

평창군 생활인구 유입 촉진 지원 조례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평창군은 인구 전반의 기본계획, 실태조사, 위원회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워케이션과 동계스포츠 관계인구, 생활인구 멤버십, 올림픽 유산 시설 연계 등 평창군 고유의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는 전담 조례는 존재하지 않음. 이에 기존 조례와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프로그램 실행에 특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 유형별 유입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조 ~ 제4조).

나. 워케이션 지원과 협력체 지정 관련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제6조).

다. 동계스포츠 관계인구 지원 프로그램과 시설 연계 규정을 제정함(안 제7조).

라. 생활인구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방문 유인책을 법제화함(제8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생활인구 유입 촉진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을 방문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워케이션, 동계스포츠 관계인구, 생활인구 멤버십 등 유형별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워케이션"이란 원격근무(재택근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를 수행하면서 일정 기간 평창군에 체류하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2. "동계스포츠 관계인구"란 스키·바이애슬론·봅슬레이·컬링 등 동계스포츠 훈련·경기·지도를 목적으로 평창군을 반복 방문하는 선수·지도자·심판·스태프 및 그 동행 가족을 말한다.
3. "생활인구 멤버십"이란 평창군에 반복 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회원 제도를 말한다.
4. "지역활성화 협력체"란 소속 임직원·회원을 대상으로 워케이션·동계스포츠·체험 방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 사업이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올림픽 유산 시설이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소유·관리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 및 공공서비스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생활인구에 관한 정의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② 인구 전반의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실태조사·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③ 귀농·귀촌 희망자의 이주 정착 지원에 관하여는 「평창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④ 생활인구 유형별 유입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워크이션 지원

제5조(워크이션 공간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원격근무자가 평창군에서 워크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코워킹 스페이스, 고속 인터넷 등 워크이션 전용 공간 조성 지원
2. 워크이션 체류 기간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워크이션 참가자 대상 지역 관광·문화·생태 체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워크이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이주 정보 제공 서비스
5. 그 밖에 워크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워크이션 체류 경험이 「평창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이주 정착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활성화 협력체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워크이션 또는 체험 방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소속 인원을 평창군에 파견하는 기업·단체·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활성화 협력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활성화 협력체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1회 이상 소속 임직원·회원 대상 워크이션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진 기업·단체
2. 동계스포츠 훈련 캠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인 스포츠 단체 또는 학교
3. 그 밖에 생활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③ 군수는 지역활성화 협력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유휴 공간 이용 우대
2. 워크케이션 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지원
3. 올림픽 유산 시설 패키지 이용 우대

④ 군수는 지역활성화 협력체가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동계스포츠 관계인구 지원

제7조(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동계스포츠 관계인구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계스포츠 훈련 유치를 위한 행정 및 정보 지원
2. 훈련 참가 선수, 지도자를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이용 혜택
3. 국내외 동계스포츠 개발도상국 선수 초청 훈련 프로그램 지원
4. 전지훈련 참가자 가족 대상 관광·여가 동반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관련 경기단체·협회 및 학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생활인구 멤버십 및 재방문 촉진

제8조(생활인구 멤버십 운영) ① 군수는 평창군을 반복 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멤버십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 공공시설 이용 우대
2. 지역 특산물·생산물 구매 정보 및 할인 혜택
3. 지역 축제·행사 우선 안내 및 참여 기회 부여
4. 워크케이션·동계스포츠 프로그램 우선 신청 혜택

③ 군수는 멤버십 운영 현황과 성과를 「평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인구 실태 파악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기부제 연계)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창군 기부자를 생활인구 멤버십과 연계하여 장기적 방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 대상 체험 프로그램·우대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반복 방문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계절 체험 패키지 개발) ① 군수는 동계 편중을 완화하고 연중 생활인구 유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봄·여름·가을 체험 패키지를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패키지 개발 시 고원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멤버십 회원에게 사계절 체험 패키지 우선 신청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홍보) 군수는 워케이션·동계스포츠·멤버십 등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박람회·설명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보고)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환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체 지정 착수 특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역활성화 협력체 지정 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3) 평창군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조례에 의거한 지원센터인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한 생태관광 전담 인프라를 설립하였음
 - 센터는 2016년 개설되어 생태관광 자원 조사, 전문인력 양성, 지역 주민 협의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함
- 또한 조례를 근거로 한 센터의 노력으로 선흘리, 하례리, 저지리 등의 지역을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로 인증받기도 하였음
 - 이는 타 지역의 생태관광 조례가 선언적 수준인데 반해 조례가 실제 센터,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제주의 생태관광 관련 조례의 의미가 있음



<그림 4-3> 신규 조례 제안 - 생태관광 조례 예시(제주특별자치도)

-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생태관광 육성 혹은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생태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생태지역의 관광화 수준을 극복하는 생태관광을 구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조향과 수용능력 관리 조향, 생태관광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 실태조사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표 4-5> 신규 조례 제안 - 평창군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1. 제안이유

평창군은 기존 관광 관련 조례가 존재하나, 이들은 관광 일반 진흥 및 사업자 지원, 특정 시설 운영에 한정됨. 해발 700m 고원의 생태관광 코스 개발·인증, 생태해설사 양성, 탄소중립 관광 추진, 생태계 수용 능력 관리, 청소년 생태교육 등을 통합 규율하는 조례는 현재 부재함. 이에 기존 조례와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원 생태관광 특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원 자연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및 생태관광을 진흥하기 위함을 명시(안 제1조 ~ 제3조).

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와 육성 주요 내용을 포함(안 제5조 ~ 제9조).

다.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보전 의무까지 명시하여 자연과의 상생안을 법제화(안 제 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고원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생태관광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육성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원"이란 해발 700m 이상으로서 평창군 관할 구역 내 고지대 지형을 말한다.
2.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여행 방식을 말한다.
3. "고원 생태자원"이란 고원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고산 습지, 초지, 자연 경관 및 그 서식 환경을 말한다.
4. "생태관광 사업자"란 고원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원 생태자원의 보전과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이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생태관광 시책이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 시책과 상호 연계·보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관광 일반의 홍보·마케팅 및 관광사업자 일반 지원에 관하여는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② 고원 경관의 계획·관리·심의에 관하여는 「평창군 경관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 ② 고원 경관의 계획·관리·심의에 관하여는 「평창군 경관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 ③ 마하 생태관광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 ④ 고원 생태관광 코스 개발·인증, 생태해설사 양성, 탄소중립 관광 촉진, 생태계 훼손 방지, 생태자원 실태조사 및 청소년 생태교육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제5조(고원 생태관광 기본계획) ① 군수는 5년마다 고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환경보전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원 생태자원 현황 및 보전 방향
2. 생태관광 코스 개발 및 목표 전략
3. 탄소중립 관광 실현 방안
4. 지역 주민 참여 및 소득 연계 방안
5. 자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타 조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사업자 지원) ① 군수는 고원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야생 동·식물의 종류, 분포, 개체 수
2. 고산의 면적 및 생태 건강도
3. 탐방객 수용 능력
4. 관광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추산
5. 자원 조달 계획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생태관광 육성 지원

제7조(생태관광 코스 개발 및 인증) ① 군수는 평창군의 고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인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 코스 개발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태계 훼손 최소화
2.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 접근성 고려
3. 지역주민의 참여 및 해설·안내 연계
4. 사계절 분산 운영이 가능한 코스 구성

③ 군수는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마하 생태관광지를 생태관광 코스 구성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마하 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생태관광 사업자 지원) ① 군수는 고원 생태자원 코스 인증을 취득하거나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하는 생태관광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코스 인증 취득 지원
2. 친환경 시설·장비 도입 비용 일부 지원
3. 생태관광 관련 전문 교육·컨설팅 지원

② 군수는 생태관광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① 군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창 고원의 생태 가치를 학습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제10조(탄소중립 관광 촉진) ① 군수는 관광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이용 생태관광 코스 운영
2. 생태관광 코스 내 불필요한 조명·시설물 최소화

3. 탄소중립 프로그램과의 연계
4. 관광객 대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5. 저탄소 숙박 인증 제도 도입 검토
6. 취약 생태 지역 복원 사업 시행

제11조(고원 경관 보전) 군수는 생태관광 코스 주변의 자연 경관이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로 훼손되지 않도록 「평창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 계획 및 심의와 연계하여 필요한 행정적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 주민 참여 및 상생

제12조(지역 주민 우선 참여) 군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해설, 안내 등에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협의회와의 협력) ① 군수는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협회에 고원 생태관광 전문분과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협회와 협력하여 생태관광 사업자, 지역 주민, 전문가가 생태관광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강원관광재단 보조 사업 및 국비·도비 생태관광 지원 사업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보고) 군수는 매년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특례)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록

-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용어
- #2.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용어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상/노점상	거리가게	‘거리가게’는 ‘행정/노점상’의 순우리말
	미혼	비혼	미혼은 결혼을 하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 변경 필요
	부모	보호자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 야기
	소외계층	취약계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우범지역	취약지역	
	자매결연	상호결연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장애등급	장애정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결손가족	한부모가정 등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 한정	학생	청소년/시민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여성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
	특정계층 지칭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1.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

○ 다음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수록된 자주 나오는 정비 대상 용어임

용어	권고안	용어	권고안
1인	[사람인 경우] 1명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부적당한	적당하지 아니한
2이상	둘 이상	불요	불필요
6월	[기간인 경우] 6개월	비차하다	갖추어 두다(놓다)
가중하다	(기간을, 금액을) 늘리다 (처분을) 가중하다	사전에	미리
각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산식	계산식
간주하다	(~로) 본다, 보다	상당한	상응하는, 타당한
감안하여	고려하여	상위하다	서로 어긋나다
강구하다	마련하다	새로이	새로
개입하다	바꾸어 임명하다	소명하다	밝히다, [소송의 경우] 소명하다
-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소속하에	소속으로
소정의	정해진, 일정한	경과한	지난
수인	여러 사람	수취하다	받다
연령	나이(예외 : 수급연령)	내지	또는, [숫자와 쓰는 경우] ~부터 ~까지
이율	이자율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연인의 경우] 사람	잔여	남은, 나머지
통괄하다	총괄하다	필증	증명서, 확인증, 증
제·개정	제정·개정	통·폐합	통폐합
즉시로	즉시, 바로 그때부터	처음으로부터	처음부터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때	필하다	마치다
하청	하도급	해태하다	게을리하다, 이행하지 않다
아니하는 한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도말	연도 말
의한다	따른다	임·직원	임직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기하다	도모하다, 꾀하다

○ 다음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수록된 일본식 용어와 권고안임

용어	권고안	용어	권고안
가도	임시 도로, 임시 통로	가료	치료
가식	임시 식재, 임시 심기	가필하다	고쳐 쓰다
감안(하다)	고려(하다)	갑상선	갑상샘
개호	간병	거래선	거래처
건정	잠금장치	계기하다	규정하다, 열거하다
견습	수습	계리	회계처리
계출	신고	고리	고금리
고아원	보육원	곤색	감색
공란	빈칸	공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관능검사	감각활용검사	구근	구근(알뿌리)
구배	경사, 기울기	구좌	계좌
굴삭기	굴착기	납골당	봉안당
납득	수긍	노임	임금
녹비	뜻거름	대합실	맞이방, 대기실
두개골	머리뼈	마대	자루, 포대
명기하다	적다, 기록하다	명찰	이름표
명하다	처분을 하다	미강	쌀겨
미불	미지급	부락	마을
불하	매각	사찰	조사
시건	잠금	시말서	경위서
음용수	먹는 물, 마시는 물	이서	서명, 확인, 배서
전도	선지급, 미리 지급	절취하다	자르다
제전	축제, 행사	지득하다	알게 되다
행선지	목적지	흑판	칠판
통달	도달	침목	받침목

○ 다음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수록된 일본식 외래어와 권고안임

용어	권고안	용어	권고안
가리	칼룸, 칼리	미싱	재봉틀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바란스	밸런스
구리스	윤활유	센타	센터
기아	기어, 변속장치	스라브/슬라브	슬래브
레자	인조 가죽	엑기스	추출물, 잔액
모타	모터	휴즈	퓨즈